

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929 |
|----------|------|

2017년 7월 21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17. 7. 12.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3. 회부일자 : 2017. 7. 14.
4. 상 정 : 서울특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17. 7. 20.)
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
II. 제안설명 (기획조정실장 장혁재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

2. 주요내용

- 서울시 감채기금 자원중 '15회계년도 일반회계 '순세계잉여금' 전입금 1,500억원을 4,543억 500만원으로 변경함에 따라
-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'16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〈표 2-1〉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| 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 | 당초계획 (A) | 변경계획 (B) | 증·감 (B-A) | 증감사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 입 합 계 ^{주1)} | 238,925 | 288,925 | 50,000 | |
|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| 229,913 | 279,913 | 50,000 | |
| 내 부 거 래 | 0 | 50,000 | 50,000 | |
| 전 입 금 | 0 | 50,000 | 50,000 | |
| 기타회계전입금 | 0 | 50,000 | 50,000 | 추경 전출금 반영 |
| 지 출 합 계 ^{주1)} | 238,925 | 288,925 | 50,000 | |
| 중소기업 금융지원 | 230,334 | 280,334 | 50,000 | |
| 중소기업금융지원 (중소기업육성기금) | 230,234 | 280,234 | 50,000 | |
| 중소기업직접융자 | 190,000 | 240,000 | 50,000 | |
| 융 자 금 | 190,000 | 240,000 | 50,000 | |
| 민 간 융 자 금 (시설 및 경영안정자금) | 190,000 | 240,000 | 50,000 | 시설자금 및 긴급 자영업자금 융자 확대 |

※ 주1) 기금운용계획변경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정책사업 합계와 수입, 지출 합계간 차이 있음

Ⅲ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엄지운)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 지원 자금의 조기소진 및 추가수요 발생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직접융자중 민간융자(시설자금 및 긴급자영업자금 융자) 규모를 확대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임
- 따라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중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(500억원)을 편성하여 동 기금의 수입항목에 500억

원을 전입하고,

- 지출항목에도 500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기금의 정책사업인 **중소기업 금융지원**은 당초 2,303억 3,400만원을 지출 계획 하였으나 **민간융자금**을 500억원 증액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¹⁾은 “정책사업” 지출 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지출항목이 당초보다 21.7% 증가되어 관련법규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금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금번 추경을 통하여 시설자금(200억원)과 긴급자영업자금(300억원)을 추가로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이나 현재 동 기금의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, 시설자금 및 긴급자영업자금의 융자실행률도 증가되고 있어²⁾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2) 경제진흥본부, 소상공인지원과-5181 ('17. 7.14)

IV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V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VI. 계수조정소위원회 : 구성하지 않음

◇ 첨부 : 2017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. 끝.

2017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929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7년 7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경기침체 및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기존 지원 자금의 조기소진 및 추가 수요 발생에 따라 추경을 통해 500억원을 확보하여,

나.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코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직접용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.

○ 수입 (증 500억원)

- 전입금 0억원 → 500억원 (증 500억원)

※ 시설자금 및 긴급자영업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추경 편성

(단위:천원)

| 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 | 당초계획 (A) | 변경계획 (B) | 증감 (B-A)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| 238,925,629 | 288,925,629 | 50,000,000 | |
| 세외수입 | 9,012,271 | 9,012,271 | | |
|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| 229,913,358 | 279,913,358 | 50,000,000 | |
| 내부거래 | 0 | 50,000,000 | 50,000,000 | 추경 전출금 반영 |
| 전입금 | 0 | 50,000,000 | 50,000,000 | |
| 기타회계전입금 | 0 | 50,000,000 | 50,000,000 | |

○ 지 출 (증 500억원)

- 중소기업 직접융자 확대 1,900억원 → 2,400억원 (증 500억원)

(단위:천원)

| 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 | 당초계획 (A) | 변경계획 (B) | 증감 (B-A) | 비 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합 계 | 238,925,629 | 288,925,629 | 50,000,000 | |
| 중소기업 금융지원 | 230,334,135 | 280,334,135 | 50,000,000 | |
| 중소기업금융지원(기금) | 230,234,135 | 280,234,135 | 50,000,000 | |
| 중소기업직접융자 | 190,000,000 | 240,000,000 | 50,000,000 | |
| 융자금 | 190,000,000 | 240,000,000 | 50,000,000 | |
| 민간융자금 | 190,000,000 | 240,000,000 | 50,000,000 | 시설자금 및 긴급자 영업자금 융자 확대 |
|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| 40,100,000 | 40,100,000 | | |
|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| 134,135 | 134,135 | | |
| 투자펀드출자 | 100,000 | 100,000 | | |
| 재무활동 | 7,591,494 | 7,591,494 | | |
| 기타(기금관리비) | 1,000,000 | 1,000,000 | | |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나. 예산조치 :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

※ 작성자 :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정책팀 이정순 (☎ 2133-5550)